

부산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2나514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원정, 홍광식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7.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90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4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11행의 “갑 제3 내지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을 “갑 제3 내지 8,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5~16행의 “원고는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피고 명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를 “피고 명의 인장 및 피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로 고쳐 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9. 10. 17.에, 피고가 2019. 11. 30.까지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의 80,000,000원 지급 청약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지급약정은 성립하지 않았다.

나) C이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F상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F상가를 팔아서라도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해야겠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80,000,000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80,000,000원 지급 청약의 의사표시를 기만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2, 제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0. 17. 경찰서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받던 중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80,0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받는다면 피고와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경찰에 ‘피고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1. 30.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에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가 2019. 11. 26. 원고와 통화하면서 “일단 말일까지 우리 얘기해봤으니까,” “예, 말일까지 저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9. 10. 17. 원고와 사이에 80,000,000원을 2019.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2. 1.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취소 항변에 관한 판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3자인 C에게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80,000,000원 지급 약정을 할 당시에 약정의 상대방인 원고가 C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지영, 판사 이재희, 판사 정성호